

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
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기획경제전문위원회실

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
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3. 11. 17.

나. 회부일자 : '93. 11. 17.

3. 제안이유

- 내무부장관의 도지사권한 위임사항 변경
- 의료원 제반업무 이관 (보사환경국 → 기획관리실)

4. 주요골자

- 병원의 분원설치 승인 : 내무부장관→도지사 (안 제 3조 제2항)
- 원장 임면 : 내무부장관→도지사 (안 제10조 제1항)
- 의료원 제반업무이관 : 보사환경국→기획관리실
(안 제16조 제3항)

5. 검토보고

[보고자 전문위원 안 창 국]

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
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
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병원의 분원설치승인, 원장임면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을
시.도지사에게 권한위임에 따라 제3조 제2항중 “내무부장관”을
“도지사”로 제10조 제1항중 “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”의 자구
를 삭제하고, 실국간 업무이관에 따라 경영관리 분야를 기존 보사
환경국에서 관장하던 것을 기획관리실로 이관코져 하는 것으로
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적법하도록 승인함이 타당 할것으로
사료됨